

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의안 번호	제 31 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02. 10. 21.

발의자 이석원 의원외2인

제안이유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. 10. 4일자로 개정,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례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총무위원회 소관에 경영관리실과 주민지원과를 삽입하고,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소관에서 삭제함.(안 제3조제2항)

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의 “제2호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총무위원회

기획감사실, 경영관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주민지원과,
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<u>2. 총무위원회</u>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재무과, 민방위재난관리과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3. (생략) 	<p>제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<u>2. 총무위원회</u> 기획감사실, 경영관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주민지원과, <u>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3. (현행과 같음)